

## 조문별 개정이유서

### 1. 채권금융기관 확대(안 제2조)

#### 가. 개정 이유

-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령상 면책특례 대상이 되는 ‘채권금융기관’에 주택금융공사, 주택도시보증공사, 법상 공제조합 등을 추가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함

#### 나. 개정 내용

- 채권금융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, 주택도시보증공사, 대출·융자·보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법상 공제업자를 추가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채권금융기관의 범위가 명확해져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

#### 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#### 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## 2. 금융채권자협의회 배제 기준 관련 위임근거 마련(안 제7조)

### 가. 개정 이유

-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시 부패영향평가에서 지적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### 나. 개정 내용

-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배제할 금융채권자의 범위·기준을 금융위원회가 구체화하여 고시하도록 규정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협의회 소집 통보 범위 판단기준 구체화

### 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### 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### 3. 경영평가위원회 성별균형 고려(안 제10조)

#### 가. 개정 이유

-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시 성별영향평가에서 지적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#### 나. 개정 내용

-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양성의 평등한 참여로 균형 있는 시각 반영 및 성별 대표성 제고

#### 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#### 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#### 4.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기피·회피 규정 신설(안 제15조)

##### 가. 개정 이유

-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시 부패영향평가에서 지적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##### 나. 개정 내용

-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공정성·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에 대한 기피·회피 근거 마련

#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## 라. 입법효과

-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·객관성 제고

##### 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##### 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## 5. 새마을금고, 신협 등에 대한 재산운용제한 특례 인정(안 제17조)

### 가. 개정 이유

-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협의회 의결로서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법 및 신협법상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(새마을금고법 제 29조제1항,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,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)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, 은행, 보험, 저축은행 등 타업권과의 형평성 제고

### 나. 개정 내용

- 재산운용제한 특례 대상에 새마을금고법 제29조제1항,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,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 추가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제고 및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

### 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### 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